

대구지방법원 2022. 11. 10 선고 2021나329325(본소), 2022나302426(반소) 판결
[공사대금 · 부당이득금반환청구및채무부존재확인소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

A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

B

변 론 종 결 2022. 9. 15.

판 결 선 고 2022. 11. 10.

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11. 23. 선고 2020가단69622(본소),
2020가단69639(반소) 판결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본소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고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고 한다)에게

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

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반소: 원고는 피고에게 93,12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,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(피고는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).

이 유

1. 이 법원의 심판범위

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는 전부 인용하고,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

이에 피고는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나, 반소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.

2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3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강경호, 판사 이경한, 판사 박소영